

전자상거래관련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제와 대응

A Study on FTA Issues and Countermeasures in Electronic Commerce

권오성(Oh-sung Kwon)

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FTA 체결 효과 및 추진 과제 | 참고문헌 |
| III. 전자상거래 관련 FTA 주요 이슈 및 대응 | |

Abstract

The expansion of regionalism has resulted in the creation of blocs of the world economy, so that those countries not belonging to one or more blocs can be discriminated. Though recently signed on the bill of FTA with Chile, Korea is actually alienated from the major stream of the blocs. Therefore, the Korea government makes efforts to contract more FTAs with countries such as Singapore and Japan. FTA is believed to be an important method to secure expor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long term. Therefore, we need to exactly understand critical issues and the long-run effect of FTA. The paper tries to find out important issues and potential strategies relating to electronic commerce in Korea-Singapore and Korea-Japan FTA. According to the historical facts, the economic effect of FTA depends a lot on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Therefore, additional intensive studies are required before contracting FTA in the future.

Key Words: FTA, WTO, GATT, GATS,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Korea-Japan Free Trade Agreement, Electronic Commerce, Digital Product, Paperless Trading,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 서 론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란 2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관세와 수입제한 제도를 철폐해 통상을 자유화함으로써 무역증진을 꾀하는 지역간 협정을 의미한다. 이는 각 나라간 교역을 자유화할 경우 무역거래와 국제간 분업이 확대되어 서로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이론에서 출발했으며, FTA가 체결되면 당사국간에는 세금이 면제되고 무역장벽도 제거되어 투자나 서비스 및 경쟁시장이 상호 개방되는 효과가 있다.

FTA는 오늘날 세계적인 흐름으로 국가간, 대륙간 거대한 경제블록이 생겨나고 있다. 세계무역의 70%가 FTA 회원국간 거래로 이루어질 정도로 이제 FTA는 세계적인 조류가 되었다. 각 국에서는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에 대한 교역조건을 차별화하고 있으며, FTA 비체결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세계적으로 피해받는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FTA는 2004년 세계적으로 미주와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연내 타결 15건 이상, 신규개시 1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FTA 협상 및 체결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주와 아시아지역은 모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이어서 향후 우리나라 무역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¹⁾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2월 16일 한·칠레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한·칠레 FTA가 발효된 바 있다. 또한 2004년에는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ASEAN과 각각 FTA추진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타 경쟁국에 비하여 FTA 관하여 뒤져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추진되는 FTA 체결국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FTA 체결국간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 전에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며, 이러한 연구는 FTA상의 주요 이슈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 확보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전자상거래 통상관련 연구는 주로 OECD나 WTO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FTA차원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금년부터 FTA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일, 한·싱가폴 FTA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역자유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싱가포르, 일본과 2004년, 2005년 FTA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한·중·일 3국간 및 한·ASEAN 등으로의 체결확대를 목표

1) 2003년 전세계적으로 11건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며 2004년 1월 현재 33건이 진행되고 있다. 2003년 체결된 FTA를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가 7건(역내 5건, 역외 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주 6건(역내 3건, 역외 3건), 유럽 1건(역외) 등 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중국·싱가폴·대만·태국·멕시코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은 2003년 1건 이상 FTA를 맺고 있다. 2004년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은 미주 17건, 아시아 12건, 유럽 11건, 대양주 4건에 달하며 2004년에는 더 많은 FTA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 하고 있다. FTA 관련 주요 통신부문 예상의제로는 통상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통신서비스 개방, IT제품 관세 및 비관세(MRA 등) 등이 있으며, 예상협력 의제로는 전자서명상호인정, 사이버테러, 개인 정보보호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상거래에 한정하여 FTA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FTA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FTA 체결 효과 및 추진 과제

1. FTA 의의

FTA란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체약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FTA는 유사한 경제통합의 한 형태인 관세동맹과 비교해 보면, 둘 다 가맹국이 비가맹국들에 대해 무역을 제한하는 역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FTA는 가맹국이 비가맹국에 대해 관세를 각각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비해 관세동맹은 비가맹국에 대해 공동의 관세를 부과하는 단일관세 주체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FTA의 체결국들은 역외국에 대해서 체결국 각자가 별도의 관세와 무역정책들을 유지하므로 공동역외관세를 유지하는 관세동맹과 차이가 있다. 더구나 FTA의 경우 가맹국이 비가맹국에 대해 관세를 각각 독자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비가맹국 상품에 대해 고관세 정책을 취하는 역내 가맹국은 이를 직접수입하지 않고 동일한 비가맹국에 상품에 대해 저관세 정책을 취하는 역내 가맹국으로부터 간접수입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형태는 수준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으로 분류된다.

〈표 1〉 경제통합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 관세 철폐	역외공동관세 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 경제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완전경제통합 (EU: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자료: 외교통상부,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추진」, 2002, p.1.

지역통합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 말 이전에도 주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와 EC(유럽공동체)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80년대 말 이후 냉전체제의 붕괴와 변동환율제 정착에 따른 국제금융체제의 변화, 무역개념의 확대와 기업활동의 세계화 경향 등 경제활동의 자유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국제경제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정책적 대응방안의 하나로서 1990년대 이후 지역주의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통합을 강화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냉전체제의 붕괴로 국가 관계에서 지정학적인 고려요소가 쇠퇴하고 경제이익의 극대화가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로 대두되었고, 둘째 변동환율제하에서의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이에 따른 자본이동, 국가간 직접투자(FDI)의 자유화 경향이 강화되고, 셋째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의 발달에 따른 기업 생산활동거점의 세계화 경향이 발생되고, 넷째 무역정책 범주의 확대, 즉 국경조치(border measure)뿐 아니라 투자나 경쟁정책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국내적 각종 규제 제도까지도 무역자유화 문제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가 이러한 새로운 자유화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노출되었고, 다섯째 1990년대 이후 EU의 경제통합 강화 추세에 따른 대응적 수단으로서의 양자간 또는 지역내 복수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의 유용성이 부각되고, 여섯째 지역통합이 결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수출, 투자확대 등 해외 시장진출의 교두보가 확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FTA의 역내산 상품에 대한 무관세 조치로 인해 역내국가간 교역이 증대되나, 역외국가는 역내시장에서 역내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된다. 또한 FTA 체결국들은 역내산 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두어 원산지 충족기준을 강화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특혜를 받기 위한 역외국들의 역내투자가 촉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에 관련하여 양자간 또는 소지역만의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인 WTO의 이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발전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WTO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양자간 또는 소지역내 자유무역협정을 WTO와 합치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WTO협정에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²⁾

첫째, 역내국간의 역내국산 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서 관세 및 기타 제한적 무역조치들이 제거되어야 하며(GATT 제24조제8항), 역내국산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substantially all discrimination)”이 철폐되어야 한다(GATS 제5조제1항).

둘째, 역외국에 대해서는 상품과 관련, 지역무역협정 체결 이전보다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정들이 더 높거나 제한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정체결 전보다 서비스교역에 대한 장벽의 일반적 수준을 인상시켜서는 안된다(GATS 제5조제4항).

셋째, 자유무역협정을 형성하는 전단계인 잠정협정은 자유무역협정으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이행기간(reasonable length of time)”이 부여되는 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이내에 이행

2) 외교통상부,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2000, pp.14-15.

해야 한다(GATT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 제3항).

또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신규가입국이 생긴 경우에는 WTO에 통보해야 하며, WTO 지역협정위원회에서 상기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역협정위원회의 검토가 완료되면 검토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일반이사회에 제출되어 합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바, WTO 출범이후 아직까지 심사가 종료되어 일반이사회에 회부된 사안은 없다. 한편 지역무역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WTO 회원국은 2/3 이상의 다수결에 의해 동 협정을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GATT 제24조제10항).

2. 우리나라의 FTA 체결효과 및 협상 과제

1) 한·싱가폴 FTA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첫 공식 협상이 2004년 1월 27일 싱가포르에서 시작되었다.³⁾ 한·싱가폴 자유무역협정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지난해 말 공식 협상을 시작한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세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1) 협상분야

상품무역에서의 관세·비관세 장벽의 철폐뿐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다양한 경제협력사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싱가폴 자유무역협정 협상에는 두 나라 금융감독당국 사이의 정보교환 등 금융 부문을 비롯해 무역과 투자, 과학기술, 운송, 정보통신, 방송 부문의 다양한 협력사업으로 두 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한·싱 FTA 기본방향으로 양국간의 FTA는 WTO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가 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협력 사업을 포함할 것이다. 관세·비관세장벽, 농업, 원산지, 통관절차, SPS/TBT, 상호인정,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정보통신, 무역구제에 있어서 자유화 및 원활화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되, 농수산업 등 한국의 민감 산업에 대해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양국 제품만이 역내산으로 인정받고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산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3) 한·싱가폴 FTA가 논의된 배경은 1999년 9월에 APEC 정상회담시 고숙통 총리가 양국간 FTA 체결을 제안한 이래 싱가포르 측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FTA를 제안하였다. 이후 2002년 10월 16일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싱가포르의 FTA 추진이 결정되었고, 2002년 11월 14일에 시드니 WTO 각료회의 계기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 발족에 합의하였다. 이후 2003년 3월 4-5간 서울에서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2003년 7월 29-30간 싱가포르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3년 9월 4-5간 서울에서 제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통관절차, 무역투자진흥 및 중소기업협력, 방송, 환경,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 금융, 운송, 경쟁정책,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이 논의되어야 한다. 양국 금융감독당국간 정보교환 MOU체결, 싱가포르 GIC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의 외환보유액 운영경험 공유 등의 금융협력 사업 논의 및 정보통신 관련 상호인정을 통한 양국간 기술장벽 제거, 무선통신기술 및 디지털 콘텐츠 관련 협력사업이 논의되어야 한다.

(2) 협정 체결 효과

한·싱 FTA의 경제적 효과로는 1)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양국은 이미 대부분 품목에 대해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FTA를 통한 양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로 양국간 무역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서비스부문 자유화를 통한 서비스무역 증대이다. 양국간 서비스부문 자유화를 통해 서비스무역 증대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된다. 3)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이다. 투명하고 개선된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증대할 수 있다. 4) 무역원활화를 통해 기업비용이 감소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통관절차, 상호인정체제 구축을 통한 시험인증절차 간소화로 기업 비용 감소를 기할 수 있다. 또한 금융, 무역과 투자, 정보통신, 인적자원개발, 방송 등에서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양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협력을 통해 양국의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양국 민간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및 영업활동 증대된다. 한편 무역과 투자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내에 한국센터 설립, 수출보험기관간 협력,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통한 사업자 연결 등의 협력을 통해 무역과 투자가 증진된다. 정보통신 측면에서 상호인정체제 구축, 무선통신기술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 협력 등으로 상대국 및 제3국으로 정보통신사업 진출 확대된다. 방송부문은 방송콘텐츠 및 디지털미디어에 관한 정보교환과 사업협력으로 한국 방송물의 싱가포르 및 아시아지역 진출 확대 및 양국의 디지털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이 촉진될 것이다. 5) 양국간 분쟁해결절차 설립으로 무역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략적 효과로는 먼저 한국의 동남아 진출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싱가폴은 동남아 및 ASEAN의 금융, 운송, 물류의 hub로, 싱가폴을 교두보로 하여 동남아 시장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ASEAN과의 FTA추진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한·싱 FTA를 통해 싱가폴 측의 동북아 진출 확대 및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다자무역체제의 보완 및 강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싱 FTA는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제반 경제협력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세계무역자유화에 기여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촉진시키는 보완적 기능을 한다.

(3) 향후 추진절차 및 전망

협상은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등 모두 9개 분과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협상은 칠레나 일본과의 협상과는 달리 특별히 민감한 분야가 없고, 특히 농업부문의 비중이 미미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로 보인다. 하지만 통관절차에서 원산지 규정이 막바지 쟁점이 될 가능성은 있다. 무역업계에서는 싱가포르의 재수출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제3국 제품의 우회수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특혜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표 2〉 한·싱 FTA 협상 분과 구성(안)

분과	협상 주관부처	세부 분과	협상 참여 부처
시장접근 (상품양허안, 비관세조치, 원산지, 통관)	외교부	상품 양허안	외교, 재경, 산자, 정통
		원산지	산자, 외교, 재경 등
		통관	재경, 외교, 산자 등
투자/서비스 (투자, 서비스무역)	재경부	투자	외교, 재경, 산자, 법무
		서비스	재경, 정통, 산자, 건교
기타 무역규범 (정부조달, 경쟁정책, 지재권)	외교부	정부조달	재경, 외교, 조달청 등
		지재권	특허청, 정통 등
		경쟁정책	공정위
표준 및 검사/검역 (SPT, TBT, MRA)	산자부	표준/상호인정	산자, 외교, 복지, 정통
		검사/검역	농림, 외교, 복지
분쟁해결 (분쟁해결, 반덤핑, SG, 총칙, 예외)	외교부	총칙, 분쟁해결	외교, 법무
		반덤핑, SG	산자, 재경, 외교
경제협력 (무역·투자진흥, 중소기업, 방송, 정보통신)	산자부	경제협력	산자, 외교, 재경, 중기, 과기, 정통 등

자료: 정보통신부, 「FTA추진계획」, 2004, p.4.

〈표 3〉 한·싱 FTA 협상 일정

협상기간	주요 내용
2003. 12 ~ 2004. 1	o 협상 modality 준비
2004. 1	o 제1차 협상 개최 - 이슈별 쟁점사항에 대한 양국 제도·현황 파악 및 입장 확인 - 가능한 분야부터 협정문 초안 제시
	o 향후 매 5~8주 간격으로 협상 개최
2004. 1 ~ 2004. 4	o 1·2차 협상 : 협정문 및 양허안 초안 제시 - 이슈별로 양국 제도·현황 파악 및 입장 확인 - 양허안 및 협정문 초안 제시
2004. 5 ~ 2004. 8	o 3·4차 협상 : 대부분의 쟁점 타결 - 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 협상 본격 진행 - 협정문 chapter별 쟁점사항 확인 및 대부분의 협정문안 합의
2005. 9	o 5차 협상 : 협상 타결 - 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 타결 - 협정문안 타결

자료: 정보통신부, 「FTA추진계획」, 2004, p.6.

(4) 향후 추진과제

① 협정문 초안 작성

정부부처별로 소관 분야의 핵심쟁점에 대한 우리측 입장 정립 및 협정문 초안 작성방향 연구를 통해 협상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협정문 초안 작성이 요구된다.

② 상품 양허안 작성

상품 양허안 작성을 위한 여타 FTA 체결 사례를 고려하여 관세철폐 카테고리, 카테고리별 양허비중 등 양허안 작성기준 연구가 진행중이며,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증가 및 국내산업 영향 등을 감안, 소관 부처별로 품목별 상품양허안을 준비중에 있다. 또한 사전적으로 양허요청 리스트를 교환할 경우를 대비, 소관분야 양허 관심품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③ 서비스 양허안 작성

정부 부처별로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및 싱가포르에 대한 개방요구안 마련하고 있다. WTO/DDA 서비스협상에서 우리측이 싱가포르에 제시한 서비스 시장 개방 요청 사항 및 싱가포르 측이 우리측에 제시한 우리 서비스 시장 개방요청 사항, 미·싱 FTA에서 싱가포르 측이 미국에 대하여 개방한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양허방식과 관련, 허용분야 열거방식(Positive list)과 금지분야 열거방식(Negative list)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한·일 FTA

한·일 FTA 추진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포괄적인 FTA를 추진한다. FTA협상에 농업 등 특정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전체 산업을 포함하고, 관세, 비관세장벽, 무역규범, 경제협력을 포괄한다. 즉 포괄적인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 무역자유화를 보완, 촉진하는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깊이 있는 자유화를 추진한다. 관세 철폐는 물론, 비관세장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시장을 상호 개방하며,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한 차원 발전시키는 실질적인 FTA를 추진한다. 셋째, WTO규범에 부합하고 대외적으로 개방된 FTA를 추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GATT 24조 규정과 현행 WTO/DDA 논의에 부합, 역외국가에 배타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FTA, 그리고 향후 동아시아 지역통합 논의의 기준을 지향한다. 넷째, 양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FTA를 추진한다. 무역자유화를 넘어서 구조개혁 촉진 등 경제전반에 긍정적 충격이 되도록 추진하고 양국간 FTA로 인한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⁴⁾

4) 외교통상부, 「한·일 산·관·학 공동연구회 논의 동향」, 2002, pp.5-12.

(1) 협상분야

한·일 FTA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투자 및 서비스시장 자유화,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등을 망라하는 무역 원활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일 FTA는 무역 및 투자, 인적교류,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중소기업 협력을 포괄하는 경제협력으로 추구하고,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를 포함한 분쟁해결절차를 두기로 하였다.

한편, 한·일 FTA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접근하였다. 한·일 FTA가 궁극적으로 중국 등 제 3국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우리측 언급과 관련, 일본측은 우선 한·일 FTA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양국 무역통계 분석을 통하여 양국간 교역구조 및 분야별 관세철폐 방안 등 관세양허의 기본방향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산업계의 큰 관심사항인 비관세 조치의 개선 문제는 구체적인 사례 발굴과 실질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등의 국제기구의 분류기준, 업계 제기사항 등을 근거로 제시한 비관세 조치 유형(수량제한, 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조치, 유통관행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 방지와 양국간 무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 마련 방안과 양국간 교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의 개선, 전자무역거래(paperless trading) 촉진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2) 협정체결 효과

한·일 FTA는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양국의 본격적인 대응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동북아에서 가장 구매력이 높은 1억7천만 인구의 시장과 전세계 GNP의 17%를 차지하는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게 된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한·일 FTA는 대규모 지식을 축적하고 산업기반을 갖춘 거대선진경제권과의 본격적인 FTA로서 시장확대효과 외에도 장기적으로 기업체질 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고,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첨단기술 및 지식이전의 통로(conduit)가 됨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격차를 극복하여 일본의 소득수준에 수렴(converge)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양국기업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나아가서 이를 통한 제3국 공동 진출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일 FTA는 한중일 FTA 또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등 더 큰 규모의 경제통합체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작용하며, 또한 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 기술, 정보의 양국간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한·일 FTA는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양국간 교류협력관계를 공동번영과 평화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한 차원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FTA는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모색해야 하는 한국과 10년이 넘는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 경제 모두에서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를, 한국은

일본의 비관세장벽 제거로 인한 수출증대를 FTA의 직접적인 효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사업이전과 투자활성화까지 FTA를 통해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일 FTA의 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단기적으로 한일 FTA체결이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일 FTA는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업종별로 보면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반면 자동차, 기계, 전자 등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일 FTA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일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일본시장 및 제3시장 개척 등이 필요하다.

(3) 향후 추진절차 및 전망

협상은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등 분과별로 진행된다. 한·일 FTA 협상은 한·싱 FTA 협상과는 달리 경쟁력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며, 관련 연구를 통하여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

<표 4> 한일 FTA 분과 구성(안)

분과	협상 주관부처	세부 분과	협상 참여 부처
시장접근 (관세, 원산지, 통관)	외교부	상품 양허안	외교, 재경, 산자, 정통
		원산지	산자, 외교, 재경 등
		통관	재경, 외교, 산자 등
비관세조치 (비관세조치)	외교부	비관세조치	외교, 재경, 산자, 건교
투자/서비스 (투자, 서비스무역, 인력이동 등)	재경부	투자	외교, 재경, 산자, 법무
		서비스	재경, 정통, 산자, 건교
기타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재권, 경쟁정책 등)	외교부	정부조달	재경, 외교, 조달청 등
		지재권	특허청, 정통 등
		경쟁정책	공정위
표준 및 검사/검역 (SPS, TBT(기술장벽), MRA(상호인정협정))	산자부	표준/상호인정	산자, 외교, 복지, 정통
		검사/검역	농림, 외교, 복지
분쟁해결	외교부	총칙, 분쟁해결	외교, 법무
		반덤핑, SG	산자, 재경, 외교
경제협력 (산업협력, 중소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 등)	산자부	경제협력	산자, 외교, 재경, 중기, 과기, 정통 등

자료: 정보통신부, 「FTA추진계획」, 2004, p.8.

〈표 5〉 한일 FTA 협상 일정

협상 기간	주요 내용
2003.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협상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구성, 협상범위(scope), 향후 일정 등 협상 modality 확정 - 사전 준비가 될 경우, 분과별 주요 쟁점에 대한 분과별 회의 ○ 향후 매 2~3개월 간격으로 협상 개최
2003.12 ~ 2004.06	○ 제1단계 : 협정문 및 양허안 초안 제시
2004.07 ~ 2004.12	○ 제2단계 : 주요 쟁점 타결 시도
2005.01 ~ 2005.12	○ 제3단계 : 협상 타결

(4) 향후 추진과제

① 협정문 초안 작성

정부부처별로 소관 분야의 핵심쟁점에 대한 우리측 입장 정립 및 협정문 초안 작성방향 연구를 통하여 협상의 기초가 될 협정문 초안 작성이 요구된다.

② 상품 양허안 작성

여타 FTA 체결 사례를 고려하여 관세철폐 카테고리, 카테고리별 양허비중 등 양허안 작성기준 연구가 필요하다.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증가 및 국내산업 영향 등을 감안, 소관부처별로 품목별 상품양허안을 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사전적으로 양허요청 리스트를 교환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관분야 양허 관심품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③ 서비스 양허안 작성

정부부처별로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및 개방요구안 마련하고 있다. 양허방식과 관련, 허용분야 열거방식(Positive list)과 금지분야 열거방식(Negative list)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하고 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최혜국대우 부여 문제, 전자상거래 포함 문제 검토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III. 전자상거래 관련 FTA 주요 이슈 및 대응

1. 전자상거래 정의

FTA 체결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상호 개방될 경우, 1)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 2) 우리가 내주어야 할 부분, 3)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⁵⁾ 또한 단계적 개방 및 향후

새롭게 등장할 이슈에 대하여 추후에 협상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두어 향후 국가 이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상품의 정의의 경우 자국의 전자상거래 상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등은 광의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협의의 정의가 요구된다.

또한 WTO, OECD 등의 전자상거래 정의에 있어서 기술중립성⁵⁾을 언급하고 있다. 기술중립성이란 정부가 기술표준이나 상품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하고, 시장스스로 표준이나 상품을 결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중립성의 인정은 우리나라의 효율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며 비효율을 확대할 것이다. 금번 2004년 2월 개최된 한·미 통상 협의에서도 미국정부는 한국정부가 위피(WIFI)⁷⁾를 단일 기술표준으로 설정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이 텔레콤 분야에서 표준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미국의 상품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장(넓게 해석하면 기술중립성 위배)하고 있다. 위피는 국내에서 개발된 무선인터넷 플랫폼으로 위피가 통상 이슈로 떠오른 것은 통신시장에 미치는 과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이며, 미국은 쉐컴사의 브루(BREW)도 위피와 함께 무선인터넷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을 촉구한데 이어 최근 한국을 통상문제 '주요 우려대상국'으로 분류하는 등의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통상회담에 앞서 위피와 브루 문제의 해결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중이다. 이처럼 기술중립성을 언급하면 차후에 이러한 문제의 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협정문에서 기술중립성은 언급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디지털재화의 분류

전자적 방식은 물론 물리적인 형태로 전달될 수 있는 S/W, 디지털콘텐츠 등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를 제품 또는 서비스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하느냐가 쟁점사안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표준화

5) 참고로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부문은 방송 콘텐츠, 게임 등 소프트웨어 등이다.

6) 기술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기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법제에서의 기본 개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전자상거래도 결국은 전통상거래가 그 기본 개념은 유지된 상태에서 on-line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7) 국내 업체들은 위피 개발 이전에 저마다 다른 플랫폼을 사용해왔다. 즉 SK텔레콤은 신지소프트 등이 개발한 순수 국산인 GVM, GNEX 등을 사용해왔고 KTF는 브루와 맵(MAP), LG텔레콤은 자바계열의 왓(WAP)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이들 방식에 맞는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소비자들도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무선플랫폼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단점 때문에 모든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위피라는 단일표준을 개발하였다. 위피는 전세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90% 이상이 채택하고 있는 자바(JAVA)언어와 C언어를 기본으로 제작됐으며 실행속도가 브루에 비해 다소 늦지만 안정적이고 보안에 강한 성격을 지녔다. 반면 미국 쉐컴사의 브루(BREW)는 C언어를 기초로 자사 칩에서만 구동이 가능하며, 실행속도는 위피보다 약간 빠르지만 바이러스와 보안에 약한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 5 Mar. 2004.)

된 컴퓨터소프트웨어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공급될 수도 있고 디스크와 같은 물리적 운송수단을 통하여 공급될 수 있다. 이들은 밀접한 상호대체성을 가지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내용물은 동일하므로 이들 두가지 형태에 대하여 동일한 규범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상품으로 분류시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는 GATT수준의 규범이, 서비스로 분류시 교역 제한이 보다 용이한 GATS수준 규범을 적용하게 되어 시장개방 범위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디지털재화 분류와 관련하여 미국⁸⁾, 일본 등은 기술중립성을 근거로 offline상품과 같이 상품으로 분류(자유무역 원칙)를 주장하고, EU, 싱가포르⁹⁾ 등은 서비스로 간주(무역제한을 폭넓게 허용)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2003년 체결된 미-싱 간 FTA에서는 디지털 재화를 디지털방식으로 코딩하여 매체에 저장 또는 전자적 전송이 가능한 재화로 정의하되 상품분류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표 6> 디지털 재화의 분류 및 적용규범 비교¹⁰⁾

구분	상품(GATT)	서비스(GATS)
개방 의무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적용	분야별 개방약속에 따라 상이
시장개방 제한	시장개방을 전제로 수량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	수량제한을 폭넓게 허용
관세부과 여부	관세부과 전제	관세부과 가능

자료 : 정보통신부, 「한-싱 FTA 관련 전자상거래 분야 검토」, 2004, p.2.

- 8) 미국은 전자전송물의 분류 문제에 대해서는 GATT가 GATS 보다는 보다 무역자유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WT/GC/W/16, 1999.2.12)이다. EU는 제안서(S/C/W/183, 2000.11.30)에서도 또다시 전자전송물은 GATS의 범위에 속함을 주장하였다. EC는 일반이사회에서도 서비스 무역이사회에서는 서비스로 간주하자는 분명한 주장이 있음에 반해 상품무역이사회에서는 아무런 제안이 없으므로 분류문제는 Horizontal 이슈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 9) 싱가폴은 1999.7월 당시 제안서(WT/AC/W/247,1999.7.9)를 통해 디지털상품을 서비스 혹은 지적재산권으로 분류하고, 분류문제와 관계없이 MFN, NT 조항과 같은 기본원칙 적용 주장하였다. 즉, 1) 지적재산권으로 분류할 경우는 관세부과 대신 royalty 지급 문제로 다룬다. 2) 온라인거래와 오프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동종상품간의 관세부과 차별문제는 ITA 적용을 가속화함으로써 해결한다. 한편, 싱가폴은 2000.10.11 일반이사회에서 디지털상품의 분류와 관련 각각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으로 보는 세 가지 견해가 있으나 성격상 서비스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GATS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2001.5월 일반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서 발표하였다. 1) 소프트웨어나 전자책처럼 형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유형들의 분류가 문제가 되는 바, 공급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그 서비스를 전송하는 것이 중요하지 소비자가 그 상품을 다운로드 하거나 프린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 그러므로 관련 규범은 GATS이다. 2) 전자전송되는 책과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출입되는 책은 적어도 HS 체제하에서는 동종상품이 아닌. 상품분류는 전자상거래 운송수단 - 플로피 디스켓, 필름, 책 등 - 에 바탕을 둔 것인데, 그러한 운송수단이 없으면 이러한 상품분류주장의 근거가 없어짐. 콘텐츠에 대해서는 HS 분류가 없다. 3) 몇몇 국가는 GATS 적용시 양허에 따라 대우가 부여되므로 현재 ITA 품목이 누리는 것과 같은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 소프트웨어 같은 상품은 온라인상에서도 오프라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회원국간 협정을 체결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외교통상부, WTO 전자상거래 논의현황 및 대응방안, 2001, pp.1-37).
- 10) GATT와 GATS의 차이(OECD 문서, TD/TC/WP(98)30)는 다음과 같다. 1) GATT는 내국민 대우에 관한 일반적인 의무를 강조한다. 2) GATS는 정부가 시장접근 있어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량적 제한이 허용되나 GATT에서는 스크린 쿼타,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량제한, 셰이프가드 발동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수량적 제한이 금지된다. 3) 조세체계에 있어 회원국의 구체적 약속 상 내국민대우를 지켜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GATS는 관세 혹은 과세에 대하여 언급이 없지만 GATT는 관세율이 영(zero)세율이 아닌한 관세의 부과를 상정한다. 4) GATT는 국경간 상품의 교역에 집중하지만 GATS는 국경간의 서비스교역 이외에 서비스 교역의 일부로 자연인의 이동 및 상업적 주제와 고정사업장도 고려된다. 5) GATT에는 정부조달 및 셰이프가드 등 규정이 있지만 GATS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6) GATS에는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GATT에는 제한규정이 없음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한·싱 FTA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싱간 FTA와 같이 분류 규정은 두지 않고 정의만 규정(§152)하고 있다. 동 연구보고서는 전기통신, 금융서비스 등 전통적 서비스는 전자상거래가 아닌 별도 규정이 규율되어 디지털재화와 별도로 취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재화로 거래되었던 음악 등 콘텐츠는 계속 상품으로 분류하고, 기존 서비스는 서비스로 분류함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기존 재화가 디지털 거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¹¹⁾ 다만, 상품분류에 대한 국제합의가 마련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단일입장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한·싱 FTA에서는 별도 분류규정은 두지 않고, 향후 WTO 논의 결과가 도출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탄력적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분류문제는 협상시한과 함께 각국의 규제제도 및 기존 양허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분류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디지털산업의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해외시장진출의 기회확대와 국내산업의 보호실익을 검토한 뒤 전자상거래의 분류 문제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 7> on-line 및 off-line 동시 교역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현황

관련 분야	현 황
컴퓨터 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GATT상으로는 우리는 ITA 가입국이므로 0% 관세 부과 o GATS상으로는 1.B.b(Software implementation service)가 근접한 카테고리이며, 우리나라는 이 부분을 이미 양허 (내국민대우 제한 없음)
서적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GATT상으로는 0% 무관세를 취해 왔음. o GATS상으로 출판업(인쇄업) 1.F.p 양허 (내국민 대우 제한 없음)
비디오테잎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GATT상으로 8% 관세 부과 o GATS상으로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 서비스”는 양허 (내국민 대우 제한 없음)
음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GATT상으로 8% 관세 부과 o GATS상으로 음반·제작·배급 서비스 양허 (내국민 대우 제한 없음)
게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GATT상 무관세 o GATS상으로 정확히 어디에 속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음. 시청각서비스의 기타 서비스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의 기타 서비스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우리는 2개 분야 공히 미양허)

자료: 외교통상부, 「WTO 전자상거래 특별회의 의제 검토 요청사항」, 2002, pp.5-6.

일종의 거래방식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규범 판단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자적 전달물에 기초하는 것이 합당하다. 디지털재화 논의와 관련하여 GATT로 판단하는 경우 이미 저관세율이 실현되어 있으므로, 미국은 경쟁력 있는 자국의 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11) 이와 관련하여 재경부, 산자부는 상품취급을 원칙으로, 문관부는 상품으로의 분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가급적 GATT를 선호한다.

GATS로 판단하는 경우 디지털재화 교역은 각국의 양허조건과 국내규제에 의존하므로, EU는 디지털 재화 교역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보하고자 전략적으로 GATS를 선호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해외시장진출의 기회확대와 국내 산업의 보호실익을 검토한 뒤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규범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관세

디지털 재화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는 상품분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만약 디지털전송물이 GATT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관세부과 논의는 필요없지만, GATS 적용을 받을 경우에도 내국민대우 부문에 양허를 하지 않는다면 수입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재화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 및 기준 등이 문제되나, 기술상 한계로 현재는 물품을 추적하고 관세권을 확보하는 것은 곤란하다. 당분간 관세권 확보가 곤란하고 전자상거래 촉진 취지상 모든 WTO회원국이 당분간 무관세 관행을 연장하는 것은 동의하고 있으나 향후 무관세의 영구화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관세관련 주요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미국과 호주는 무관세관행의 영구화 주장하고 있는 반면 EU는 당분간 관세 부과유예를 유지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영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인도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관세부과유예를 함으로써 기술중립성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며, 다른 수단으로 전송되는 물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물에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은 기술중립성원칙을 해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전자적 전달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 관행은 계속 유지하되,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 문제는 기술 발전 사항을 보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싱 FTA연구보고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장벽 제거차원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재화에는 영구적 무관세 혜택 부여(§153, 155조)하기로 되어 있다. 다만, Offline으로 수입되는 전송매체에 대한 관세부과 기준은 해당 전송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재화가 아닌 매체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무관세 영구화 여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및 향후 관세 부과기술의 개발추이와 함께 경쟁국들의 무관세 경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타 경쟁국에 비해 무관세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 향후 미국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 강국과의 협상시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을 감안, 협상여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단계적 개방이 바람직하다. 최근 한류열풍으로 온라인게임, 드라마, 영화 등 디지털콘텐츠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디지털콘텐츠 산업 전반의 대외경쟁력 분석 및 향후 발전추세에 대해서는 보다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국인 싱가포르의 영구무관

세 조치로 인한 혜택과 향후 미국 등과의 FTA협상시 영구무관세 문제를 leverage화 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서로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전자상거래 관세 관련하여 미·싱 FTA 14.1조는 미국 측의 입장이 전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역장벽의 전면 철폐 및 사용이나 개발에 대한 장벽 철폐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미·싱 FTA 14.3.1조에는 전자적 전송(transmission)형태로 진행되는 on-line 전달 형태의 당사국간 거래의 경우 무관세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싱 FTA 14.3.1조는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전자전송 형태의 디지털 제품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구무관세는 미국이 주장하는 논리이며, 영구무관세의 언급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문제는 타국의 불공정관행, 관세, 비관세,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영어로 된 콘텐츠가 경쟁력이 있으며, 미국은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경쟁력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영구무관세의 언급의 피하고 기술발전에 따라 검토하여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문구가 협정문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원산지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지칭하며,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산지는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¹²⁾

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당국 제품만을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방지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디지털전송거래에서 원산지 규명을 위한 기술적 장치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어 실제 집행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원산지는 제3국의 우회수출 방지, 관세수입의 확보뿐 만 아니라 소비자간 분쟁해결 등에 있어서도 중요하므로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다.¹³⁾ 특히, 싱가포르를 디지털 콘텐츠, 게임의 개발보다는 중개무역 비

12) 농산물의 경우, 동일작물·동일품종이라도 재배지역·기후·토질·재배방법·시기 등에 따라 그 품질이 달라진다(예를 들면, 나주배, 청송사과, 인삼(중국산), 쇠고기(미국산) 등).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3) 원산지의 중요성으로는 1) 정부의 재정수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세는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정확한 원산지 규정 및 관리는 정부 재정수입으로서 관세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 2) 자국산업보호 역할을 한다. 자국산업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개무역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싱가포르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경쟁력 있는 산업이 상이하므로 원산지 규정의 강화는 우리나라에게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3) 국내 소비자를 보호한다. 원산지에 따른 상품의 품질과 선호가 다르며, 상품의 가격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원산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정책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을 증대하며, 신뢰구축으로 인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4)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디지털재화의 원산지 및 저작권

중이 큰 나라로서 원산지 규정강화는 우리측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현재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원산지 기술 및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타 분야에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향후 원산지규정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상대국의 디지털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일종의 원산지 규정이 필요한 바,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디지털 제품의 제조, 생산, 최초판매지 또는 그 생산자, 연출자, 배급자 등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FTA의 효과는 양국간 기업에 그 혜택이 돌아가야지 제3국으로 과급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국에서의 우회수입을 방지하는 원산지 규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 원산지 규정은 까다롭고 높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지역주의의 확대는 세계경제를 블록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블록에 속해 있지 않는 나라는 무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칠레와의 FAT가 체결되어 있으나 최근의 일이며 실제적으로 FAT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주요국과의 FTA를 체결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싱, 한·일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FTA로 인한 향후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협정체결에 보다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싱 및 한·일 FTA 체결에 앞서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주요이슈와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과거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협정문을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 산업적 과급효과는 지대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FTA체결에 앞서 관련 협상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가 현재 추진중인 한·싱, 한·일 FTA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FTA협정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추진해야만 한다. 첫째, FTA로 인하여 체결국간의 경쟁력 제고와 경쟁기반 강화를 위한 시장 제도 개선을 유도해야 하며, 동시에 FTA협상에서 각종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경제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FTA 협정의 이해와 효율적 활용 확대가 요구된다. FTA에 대하여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자세가 요구되며 이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FTA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민·관 합동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FAT 협정문에 재협상 및 협상개정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쌍무협정문들을 살펴보면 재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아 피해를

표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확대할 수 있다.

본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상황변화를 대비한 문구가 협정문에 항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장신원, “원산지과 전자상거래”, 한국전자통신연구원(내부문서), 2004.
- 김양희,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한국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 200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GATS 전자상거래 논의현황과 우리의 대응”, 1999.
- _____, 「FTA 정책 자료」, <http://www.kiep.go.kr>, 8 Feb. 2004.
- 외교통상부, 「우리나라 FTA 추진방향」, <http://www.mofat.go.kr>, 15 Feb. 2004.
- 외교통상부,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2000.
- _____,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2002.
- _____, 「WTO 전자상거래 특별회의 의제 검토 요청사항」, 2002.
- _____,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2002.
- _____, 「한·일 산·관·학 공동연구회 논의 동향」, 2002.
- _____, 「WTO 전자상거래 논의현황 및 대응방안」, 2001.
- _____, 「WTO와 전자상거래 부차별 검토의견」, WTO 뉴라운드 전자상거래 대책반, 2001.
- 정보통신부, 「전자상거래 관련 FTA 검토」, 2004.
- _____, 「한·싱 FTA 관련 전자상거래 분야 검토」, 2004.
- _____, 「FTA추진계획」, 2004.
- _____, 「제4차 한·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질의·응답 자료」, 2002.
- 정인교, “한·일 FTA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 2002.
- 최계영·이은민, “FTA와 IT부문 대응 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12.
- 최윤정, “우리나라의 중장기 자유무역협정 추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 2001.
-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 국제협력 대응전략 연구”, 2000.
- _____, “전자상거래 관련 자유무역협정 논의 대응”, 2004.
- MOFAT,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Joint Study Group Report,” October 2003.
- MOFAT, “Korea-Japan Free Trade Agreement: Joint Study Group Report,” October 2003.
- WTO, WTO Documents(<http://www.wto.org>).